엘리시안 강촌
ELYSIAN GANGCHON

엘리시안 강촌
스키장 시즌권 구매고객 이용약관



작성자 성함 :
작성자 연락처 :

약관 작성자는 본인을 제외한 사용자(이하 구성원)에게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 사항을 명확히 고지하고 동의에 관한 위임을 받아 가입하셔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신 후 구성원과 동의 여부를 기재하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①, ②, ③, ④, ⑤를 작성하여 주시면 빠르고 편리하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①

스키 시즌권												렌탈 시즌권				
전일권						주중		야심권		심야권		전일권		주중권	야심권	심야권
대인	Y65	Y19	소인	패밀리		여성전용	대인	소인	1인	2인	1인	3인	프리미엄	스탠다드			
				1시즌	2시즌											

구분	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	신장	결재방법
사용자1			남			
			여			
사용자2			남			
			여			
사용자3			남			
			여			

실사용자 정보 등록 신청			
구매자명		구매자 연락처	
구매권종		구매처	

②

법정대리인 동의서

※개인 정보 보호법에 의해 14세 미만 아동은 회원가입 시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 본인은 상기 미성년자의 연간회원 가입과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에 동의합니다.

· 관계 ☐ 부 ☐ 모 ☐ 기타 ( ) 성명 _____ 보호자(법정대리인) (서명/날인)

- 대 인 : 1956년~2000년생
- Y 65 : 1955이전 출생
- Y 19 : 2001년~2006년생
- 소 인 : ~2007년생

※패밀리권 구매시 가족관계증명서나 등본, Y 65, Y 19, 소인 구매시 출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부탁드립니다.

③

아래 약관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확인 및 일괄 동의 합니다. 동의 ☐

※일괄동의 시 아래의 개별 확인 또는 동의여부를 체크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원가입 주요 고지사항

① 스키시즌권은 동계시즌(2019년 11월 개장일~2020년 3월 폐장일)동안 리프트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스키 및 보드 애호가들에게 특별히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하는 상품입니다.

② 시즌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 부정사용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귀책사유가 있는 "고객" 또는 부정 사용한 자에게 귀속되며, 시즌권 구입가격에 해당하는 금액 및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한 혜택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합니다.

③ 시즌권을 분실·멸실·훼손한 경우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 허용은 유효기간 중 1회로 한정하며, 재발급 신청서, 신분증을 제출해야 하며 재발급 수수료 22,000원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④ 시즌권의 양도·양수는 최초 구입자 기준 1회에 한하며, 양도·양수자의 신분증, 양수자의 구비서류(신상명세, 사진 등)를 지참하시고, 양도·양수수수료를 납부 후 가능 합니다. 단, 스키장 개장일로부터 70일 이후에는 서비스 기간으로 간주되어 양도·양수가 불가능합니다. 양도·양수 수수료는 구매일로부터 스키장 개장후 30일 이내에는 33,000원이며, 31일이후부터 70일이내에는 55,000원 입니다.

⑤ 시즌권이 제작되어 발급된 상태에서 스키장 개장 후 "고객"이 환불을 요청할 경우에는 구매금액에서 위약금/ 발급수수료를 선공제한 후 잔액에서 선공제한 잔액기준 총 사용일수(70일)로 나눈 금액을 환불요청일(시즌권 반납일)까지의 일수를 곱하여 금액을 추가로 제외한 후 환불하여 드립니다.

환불금 = 구매금액 - (위약금 + 발급수수료) - [{구매금액 - (위약금 + 발급수수료)} / 70일 X 시즌권이용일수]

- ○ 시즌권 이용일수는 시즌권 수령일로부터 환불요청일(반납일)까지의 누계 일자
- ○ 단, 개장전 시즌권 수령하신 고객은 개장일로부터 환불요청일(반납일)까지의 누계 일자에 맞춰 적용
- ○ 위약금은 직영 구매 시 구매금액의 10%, 대행 구매 시 구매금액의 20%

⑥ "회사"에서 판매한 스키시즌권 전체 상품은 유효기간내에서만 환불이 가능하며, 유효기간 후 환불요청이나 차기시즌 이월은 불가합니다.

⑦ 2~3인으로 구성된 Group 형태의 시즌권은 부분환불이 불가능한 상품으로서, 양도·양수는 가능합니다. 단, 양도·양수를 희망할 경우, 희망하는 "고객"은 개인상품과의 요금 차액을 "회사"에게 추가로 지불하여야 합니다.

⑧ '패밀리 전일권'은 13세 이하의 자녀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상품으로서, 발급 이후 사용 중에는 환불이 불가능한 상품입니다. 단, 양도·양수는 시즌권 약정기간 중 1회에 한하여 보호자 또는 자녀 중 1인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양수가 가능한 자녀의 경우는 13세 이하의 직계 자녀야 하며, 보호자의 경우에는 구매자의 법적 배우자에게만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엘리시안 강촌스키장은 스키시즌권 발행을 목적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본인 확인제에 따른 본인 확인
- ○ 불량회원의 부정 이용방지 및 비인가 사용
- ○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 대리인 동의 여부,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 확인
- ○ 고객 불만처리 등 민원 처리, 고지사항 전달

②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필수 정보 : 성명,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 신장, 사진, 만14세 미만 아동 법정대리인 성명 및 연락처
- ○ 선택 정보 : 주소, 이메일주소
- ○ 수집 방법: 고객이 직접 작성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 ○ 부정이용 기록(보존이유 : 부정 이용방지, 보존기간 5년)
-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보존이유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보존기간 3년)
-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보존이유 : 소비자기본법, 보존기간 3년)

④ 귀하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가 수집, 이용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스키장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필수]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선택] 마케팅 정보활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선택] SMS 수신에 동의하십니까? (마케팅 정보활용에 동의한 경우) ☐ 예 ☐ 아니오

④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을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반드시 자필로 서명해주세요.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엘리시안강촌 홈페이지(http://www.elysian.co.kr)에 공개한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참조하십시오. 다만, 본 동의서 내용과 상충되는 부분은 본 동의서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엘리시안 강촌 스키장 시즌권 구매고객 이용약관

⑤ 본인은 본 이용약관 내용을 숙지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반드시 자필로 서명해주세요.

성명 (서명)

20 년 월 일

제1조 시즌권의 정의

①시즌권은 엘리시안 강촌(이하 "회사")에서 스키 또는 보드 애호가의 편의를 위해 정상적인 가격대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특별스키상품을 의미합니다.
②시즌권 고객(이하 "고객")이라 함은 본 약관을 승인하고 "회사"에 시즌권을 신청하여 발급받아 소지하는 모든 권종의 시즌권 소지자를 말합니다.
고객은 본 약관을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만 시즌권의 효력이 유효합니다.

제2조 시즌권의 사용기간 및 적용

①시즌권은 2019/2020 동계시즌(2019년 11월 개장일~2020년 3월 폐장일)동안 리프트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회사"가 지정한 부대시설에 한하여 할인 서비스를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시즌권의 사용기간은 "회사"의 스키장 개장일로부터 70일 동안으로 하며, 사용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은 서비스 기간으로 간주하여 양도·양수, 환불이 불가합니다. 이는 고객에 대한 편의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③동계시즌 중 고객의 안전을 고려하여 천재지변, 기상여건(강풍으로 인한 안전문제 발생 등)과 리프트 정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부 또는 전 리프트의 운행이 제한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불가피성을 인정하여야 하며,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3조 "고객" 의 자격 및 권리

①"고객"은 "회사"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시즌권을 지참하여야 하며 리프트 탑승전에 시즌권을 제시하여야만 "고객" 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즌권은 "고객" 본인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증명서이므로, 미지참 시에는 "고객" 혜택을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인정 확인하기 위해서 "회사"가 정한 별도의 절차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고객"은 혜택 이용 시 반드시 시즌권을 직원에게 제시 후 필요에 따라 선글라스, 마스크, 모자 등을 벗고 본인 확인에 응해야 합니다.
③시즌권은 타인에게 임의로 대용할 수 없으며, 적발 시 즉시 시즌권은 회수되며 환불 및 재발급 되지 않습니다.
④"고객"이 사정상 유효기간 중에 "고객"의 권리를 포기할 경우 이에 대한 처리는 약관상 양도·양수규정 및 환불규정에 따릅니다.
⑤시즌권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를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 때, 소정의 재발급 비용은 "고객"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⑥시즌권 분실하였을 경우, 신고 이전에 "고객" 본인의 귀책사유(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부정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고객"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⑦다음의 경우 "고객"의 자격을 상실하며 환불 및 재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가. "고객"의 유효기간이 만료한 경우
나. 시즌권을 타인에게 불법양도, 대여, 매매한 자
다. 규정된 본인 사진 등 필수 서류 제출 거부 및 위조 제출한 자
라. 본인 및 타인의 시즌권을 불법으로 위조한 자
마. "고객"의 귀책사유로 "회사"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
바. 시즌권 검표에 비협조하는 자
사. "회사" 이용 중 다른 "고객" 또는 직원의 신체나 정신·재산상 피해를 야기하여 "회사"의 방문 및 혜택이용이 부적당하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4조 시즌권의 부정사용 및 분실신고

①시즌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 부정사용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귀책사유가 있는 "고객" 또는 부정 사용한 자에게 귀속됩니다.
②시즌권 부정사용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시즌권을 이용자 본인 이외의 제 3자가 이용한 경우
나. 회사가 발급한 기준년도 시즌권 이외의 시즌권을 무단으로 이용한 경우
다. 시즌권의 이용기간 만료 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라. 양도 및 환불이 불가한 시즌권을 양도·양수하여 사용하는 경우
마. 타인의 개인정보 및 회사의 정보를 도용하여 시즌권을 발급하는 경우
③시즌권의 부정사용이 확인되는 즉시 회수/폐기/사용정지 처리되며, 부정사용의 귀책사유가 있는 자는 시즌권 구입가격에 해당하는 금액 및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한 혜택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로 이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이의를 "회사"에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④도난 및 분실된 시즌권을 이용한 경우, 형법 제329조 절도죄와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어 사법 처리를 받게 되며, 시즌권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고객은 그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⑤시즌권 분실, 멸실의 경우 "고객"은 반드시 시즌권 데스크에 분실신고를 해야 하며, 분실신고 이전에 부정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고객"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⑥본 약관을 위반하여 시즌권을 불법적으로 양도, 판매하는 행위 및 부정판매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확인되는 즉시 해당 시즌권은 사용정지/회수/폐기 처리되며 원상복구 되지 않습니다. 이로 이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고객"은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⑦불법 사용으로 적발되는 시즌권은 즉시 회수되거나 천공되어 그 사용권이 멸실됩니다. (재발급 불가)
⑧시즌권 부정 및 불법 사용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고객"은 향후 5년간 시즌권 구매가 불가합니다.
⑨각 항을 위반 또는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구입하신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제5조 시즌권의 재발급

①시즌권이 분실·멸실·훼손한 경우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 허용은 유효기간 중 1회로 한정합니다.
②시즌권을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분실·멸실·훼손 신고서와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재발급 수수료는 22,000원입니다.
③시즌권의 분실 또는 도난 시 "고객"은 즉시 "회사"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사"는 24시간의 유예 기간 경과 후 시즌권을 재발해 드립니다.
④"고객"의 부정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재발급 요청 건에 대해서는 "회사"는 시즌권의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⑤"회사"의 과실로 인하여 시즌권을 분실·멸실·훼손한 경우 "회사"는 별도의 수수료 없이 시즌권을 재발급해 드립니다.
⑥분실된 시즌권은 사용 정지되며, 추후 분실된 시즌권을 찾을 경우에도 해당 시즌권 사용은 불가하며 재발급 수수료의 환불도 불가합니다.

제6조 시즌권의 양도·양수

①시즌권의 양도·양수는 최초 구입자 기준 1회에 한하며, 양도·양수자의 신분증, 양수자의 구비서류(신상명세, 사진 등)를 지참하시고, 수수료를 납부 후 가능 합니다. 단, 스키장 개장일로부터 70일 이후에는 서비스 기간으로 간주되어 양도·양수가 불가능 합니다.
②양도·양수의 진행은 스키장 개장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양도·양수 수수료는 기간별 다음과 같습니다.
가. 33,000원 : 스키장 개장후 30일 이내에 양도·양수하는 경우
나. 55,000원 : 스키장 개장후 31일 이후부터 70일 이내 양도·양수하는 경우
③"고객" 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시즌권 양도자가 사용을 다 하였을 경우에는 양수자는 "고객"의 권리를 "회사"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④다음의 시즌권 상품은 특별상품으로서 양도·양수가 불가능 합니다.
가. 경품 및 프로모션 목적으로 발급된 무료/할인 시즌권
나. 분양회원에게 발급된 시즌권
다. 2020년 2월 이후에 사용이 가능한 특별시즌권
라. 장비렌탈전용 및 강습전용시즌권 등 특별시즌권
⑤'친구끼리(야심권, 심야권)', '여성2인전용 전일권' 등의 2~3인으로 구성된 Group 형태의 시즌권은 부분환불이 불가능한 상품으로서, 양도·양수는 가능합니다. 단, 양도·양수를 희망할 경우, 희망하는 "고객"은 개인상품과의 요금 차액을 "회사"에게 추가로 지불하여야 합니다.
⑥'패밀리 전일권'은 13세 이하의 자녀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상품으로서, 발급 이후 사용 중에는 환불이 불가능한 상품입니다.
단, 양도·양수는 시즌권 약정기간 중 1회에 한하여 보호자 또는 자녀 중 1인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양수가 가능한 자녀의 경우는 13세 이하의 직계 자녀야 하며, 보호자의 경우에는 구매자의 법적 배우자에게만 가능합니다. 양도·양수 수수료는 본조 2항과 같습니다.

제7조 시즌권의 환불

①"회사"에서 판매한 시즌권 전체 상품은 유효기간 내에서만 "고객"의 사정에 의한 탈퇴 및 환불이 가능하며, 유효기간 후 환불 요청이나 차기 시즌 이월은 불가합니다.
②"고객"의 환불과 관련하여 공제되는 발급수수료와 위약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발급수수료 : 22,000원.(시즌권 발급과 관련된 모든 제반 비용)
나. 위약금(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ㄱ. 직영(리조트 현장 및 엘리시안 쇼핑몰) 구매 시, 시즌권 구매금액의 10%
ㄴ. 대행(외부 쇼핑몰) 구매 시, 시즌권 구매금액의 20%
③시즌권이 제작 및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키장 개장 전 "고객"이 환불을 요청할 경우에는 구매금액 전액을 환불하여 드립니다.
단, 시즌권이 제작되어 있을 경우에는 발급수수료가 공제되어 환불됩니다.
④시즌권이 제작되어 발급된 상태에서 스키장 개장 전 "고객"이 환불을 요청할 경우에는 구매금액에서 발급수수료가 공제되어 환불하여 드립니다.
단, 고객이 시즌권을 수령하였을 경우, 반납을 한 이후에 환불이 진행됩니다.
⑤ 시즌권이 제작 및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키장 개장 후 "고객"이 환불을 요청할 경우에는 구매금액에서 위약금을 공제한 후 환불하여 드립니다.
단, 시즌권이 제작되어 있을 경우에는 발급수수료가 추가로 공제되어 환불됩니다.
⑥시즌권이 제작되어 발급된 상태에서 스키장 개장 후 "고객"이 환불을 요청할 경우에는 구매금액에서 위약금/ 발급수수료를 선공제한 후 잔액에서 선공제한 잔액기준 총 사용일수(70일)로 나눈 금액을 환불요청일(시즌권 반납일)까지의 일수를 곱하여 금액을 추가로 제외한 후 환불하여 드립니다.
단, 심야전용 시즌권 구매고객은 심야 영업이 시작된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며 양도·양수는 가능합니다.
환불금 = 구매금액 - (위약금 + 발급수수료) - [{구매금액 - (위약금 + 발급수수료)} / 70일 × 시즌권이용일수]
○ 시즌권 이용일수는 시즌권 수령일로부터 환불요청일(반납일)까지의 누계 일자
○ 단, 스키장 개장 이전 시즌권을 수령하신 고객은 개장일로부터 환불요청일(반납일)까지의 누계 일자에 맞춰 적용
⑦시즌권 구매시 제공되는 부가혜택을 사용하신 경우에는 적용된 혜택(할인금액 등)도 제6항의 환불액에서 차감, 공제됩니다.
⑧스키장 개장 이후 70일 이후에는 서비스 기간으로 간주되어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⑨다음의 시즌권 상품은 특별상품으로서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가. 경품 및 프로모션 목적으로 발급된 무료/할인 시즌권
나. 분양회원에게 발급된 시즌권
다. 2020년 2월 이후에 사용이 가능한 특별시즌권
라. 장비렌탈전용 및 강습전용시즌권 등 특별시즌권
⑩ 2~3명이 공동으로 구매가 가능한 시즌권은 특별상품으로서 환불이 불가능하나, 양도·양수는 가능합니다.
해당 시즌권을 구매한 "고객"이 양도·양수를 희망할 경우, 제6조 1항, 2항, 5항, 6항에 따라 진행됩니다.

제8조 손해배상

①"회사"의 시설물에 의해 "고객"에게 신체상,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이 경감 또는 면제됩니다.
②"고객"의 귀책사유로 "회사"의 시설물 파손 등 기타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9조 면책조항

①"회사"는 천재지변, 행정관청의 규제, 긴급한 안전조치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고객" 혜택의 이용이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이용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고객"은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가입비 환불금액 이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③"고객"이 제1항을 이유로 탈퇴하는 경우, "회사"는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입비를 환불해 드립니다.

제10조 기타(약관변경 및 분쟁조정 외)

①본 약관의 내용은 "회사"의 영업환경의 변화 등 기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본 약관과 관련된 법적인 분쟁의 발생 시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규정에 따릅니다.
③시즌권 구입자의 개인 신상 정보는 필요 시 일부 공유될 수 있습니다. (사고 등).

제1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19/2020 시즌권 판매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